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
----------	------

발의연월일 : 2016. 8. 19.

발의자 : 김도읍 · 김종석 · 정운천
김승희 · 김재경 · 이현승
유기준 · 박맹우 · 이우현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4. 1. 28. 2011헌바252)한바, 이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함.

또한, 「민법」의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u>금치산자·한정치산자</u></p> <p>2. · 3. (생 략)</p> <p>4. <u>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p> <p>5. ~ 7. (생 략)</p> <p>② (생 략)</p>	<p>제9조(결격사유 등) ① ----- ----- -----.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2.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